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호	1278
-----------	------

2016. 12. 19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1. 제안경위

- 2016. 6. 20. 박준희 의원 발의 (2016. 6. 22.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및 철거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무리한 강제철거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됨
- 또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서 청산자 등에 대한 협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합이 사업 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 및 법원에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음
- 현재 시에서는 행정지침으로 ‘사전협의체’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, 근거 법령이 미흡하여 사전협의를 강제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
-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조합원, 세입자 등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등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에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

3. 주요내용

-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근거 조항을 신설함(안 제42조의5 신설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같은 법 시행령
- 나. 예산조치 :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첨부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강제철거 등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합·건축물소유자·세입자

등의 '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'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16년 6월 20일 박준희 의원이 발의하여 6월 2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- 이 조례개정안이(의안번호 1278) 발의된 후, 서울시에서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원칙을 정하고 이주단계 사업장 관리 및 인도집행 현장 관리감독 등을 포함한 '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('16.9.29.)'을 발표하였고, 우미경·김기대 의원이 종합대책을 토대로 '협의체 구성 및 운영'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도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34)을 발의하였기 때문에,
- 이 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은 우미경·김기대 의원이 공동발의한 도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534) 검토의견으로 같음함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42조의5(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제출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이주대책(이주 거부에 대한 협의대책을 포함한다) 및 영 제41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철거계획서에 대한 이행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청장은 이주 및 철거와 관련하여 조합,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 간 이견이 있어 분쟁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거나, 분쟁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 사전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③ 협의체는 분쟁당사자, 해당 자치구 공무원 및 2인 이상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한다.</p> <p>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체에서 5회 이상 협의에도 불구하고 원만히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 제77조의3, 이 조례 제42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(변경인가를 포함한다)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</p>